

1. 개정 이유

진폐의 예방·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해 진폐의 조사·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이 필요하나, 법 제정 이래 지정실적이 없음. 이에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진폐전문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(안 제37조제2호)

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**진폐관련 연구실적 요건 완화**

(現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**10건** 이상 → 改 연평균 **5건** 이상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용노동부령 제 호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호 중 “10건”을 “5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)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 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 1. (생략) 2.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 청 전 3년간 연평균 <u>10건</u> 이 상일 것	제37조(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)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5건</u> ----- -----